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91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허 영 · 박상혁 · 소병훈
최혁진 · 조계원 · 이수진
박 정 · 한민수 · 서삼석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장을”을 “위원장 1명을”로,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을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경찰청차장 및 소방청차장(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3조의2(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생 략)</p>	<p>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p>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3. -----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